

1. 개정이유

산림소유자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변경 인가 대상에서 연도는 제외하고, 인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대상에서 연도 제외(안 제7조제4항)

- 1)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벌채·굴취 등의 연도·장소 등이 변경되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나 변경대상에서 연도는 제외

* 벌채·굴취 : (현행) 연도, 장소, 양, 방법(굴취 제외) → (개정) 장소, 양, 방법(굴취 제외)

** 임도시설 : (현행) 설치연도, 장소 → (개정) 장소

나. 산림경영계획 인가(변경인가) 처리기간 단축(안 별지 제1호서식)

- 1) 인가(변경인가)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

다. 산림경영계획인가서에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도록 서식 정비(안 별지 제2호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7. 10. ~ 8. 19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제 호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제1호 단서 외의 부분 중 “연도·장소·양”을 “장소·양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연도·장소”를 “장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설치연도 및 장소”를 “장소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30일”을 “20일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첨부서류	산림경영계획서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--	------------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) ① ~ ③ (생 략) ④ (생 략)	제7조(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1. 벌채의 <u>연도·장소·양</u> 및 방법. 다만, 별표 3 제1호 비고 제1호에 따라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벌채는 제 외한다.	1. ----- <u>장소·양</u> ----- --. ----- ----- ----- -----.
2. 굴취의 <u>연도·장소</u> 및 양	2. ----- <u>장소</u> -----
3. 임도시설의 <u>설치연도 및 장소</u>	3. ----- <u>장소</u>